

은빛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 정원 및 모집 (제33~34조)

- 정원은 9명, 초과 시 대기자 처리.
- 입소자는 가족 신청, 공공기관 추천, 홍보 등을 통해 모집.

2. 입소 구비서류 (제35조)

- 입소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본인 및 부양의무자)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, 건강진단서 등 필수.
- 수급자·개별 요구 시 추가서류 필요.

3. 서비스 이용 목적 (제36조)

-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시설급여 제공,
- 건강·생활 안정, 가족 부담 경감, 치료·상담·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.

4. 계약 성립 및 해지 (제37조)

- 서류 구비 후 계약서 서명으로 계약 성립.
-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계약기간 결정, 변동 시 재계약.
- 해지 사유: 본인·가족 요청, 사망, 10일 이상 무단 중단, 시설 사정 등.

5. 이용비용 (제38조)

- 요양급여 수가는 법령 기준.
- 비급여: 상급침실료, 식재료비, 간식비, 이·미용비 등(실비만 청구).
- 수급자는 본인부담률: 시설급여 20%, 재가 15%(수급권자는 0%).
- 이용료 변경 시 최소 30일 전 고지.

6. 서비스 내용 및 변경 절차 (제39조)

- 안전한 생활, 식사·배변 지원, 건강·응급관리 등 제공.
- 등급 변경 시 보호자가 서류 제출하여 재계약.

7. 재입소 (제40조)

- 재입소 시 처음과 동일 절차로 계약.

8. 당사자 의무와 권리 (제41조~42조)

● 시설의 의무

-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, 성실한 서비스 제공,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연락.

● 입소자의 의무

- 이용료 납부, 시설질서 유지, 개인정보·연락처 변경 통보 등.

● 입소자의 권리

- 사생활 보호, 종교·문화 자유, 적절한 서비스 제공, 존엄·평등 보장 등.

● 보호자의 권리

- 이용내역 확인, 건강·생활 정보 공유, 면회·외출 가능.

9. 계약 해지 사유 (제43조)

- 중대한 건강 위험/전염병, 2회 이상 이용료 연체, 규칙 위반, 심한 문제행동, 10일 이상 입원 등.

10. 이용료 변경 조건 (제44조)

- 등급 변경, 수가 변경, 계약기간 만료 등 시 변경 가능.
- 최소 15일 전 서면 통보.

11. 시설 제공 서비스 (제45조)

- 일상생활 지원, 의사소통·여가, 건강관리·응급조치, 재활·치료 서비스 전반 포함.

12. 재산 처리 (제46조)

- 사망 시 시설이 소유물을 보관 및 보호자에게 인도(15일 이내 수령).

13. 특별 보호 (제47조)

- 감염병, 임종, 위험 상황 발생 시 심리적·신체적 보호 조치 가능.
- 특별침실 운영(정원의 5% 이내).

14. 의료서비스 절차 (제48조)

- 간호사 건강관리·기록, 촉탁의 월 2회 이상 진료.
- 응급 시 119 및 보호자 연계.
- 병원 진료 시 보호자 동행 원칙, 부득이한 경우 직원 동행 가능.

15. 시설물 이용 주의 (제49조)

- 고의·과실에 의한 시설물 파손 시 배상 책임.
- 안전지침 준수, 위험물품 관리, 소화장비 비치 등.

16. 배상책임 및 면책 (제50조)

- 시설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부상·사망·오투약·상한 음식 제공 시 시설이 배상.
- 자연사, 임의 외출 사고, 천재지변, 본인 과실은 면책.